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9일
금융위원회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험설계사 김영우	890826-*****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보험설계사 김남호	611113-*****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보험설계사 유진상	790816-*****	전라북도 군산시 현충로
보험설계사 강국	750509-*****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양지로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대상자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보험설계사 김영우	프라임에셋(주)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김영우는 2016.4.29.~2016.6.30. 기간 중 보험계약자 9명으로부터 농협생명보험(주)의 '(무)행복열매NH연금보험' 9건(초회보험료 1.5백만원/모집수수료 4.7백만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경과기간별 해지환급률을 실제보다 높게 부풀린 허위 보험안내자료를 사용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제209조	과태료 370만원

처분대상자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보험설계사 김남호	보험설계사 김남호는 2013.3.28.~2015.6.23.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현대해상화재보험(주)의 손해보험계약 6건(초회보험료 총 2.6백만원)을 (주)비엠피금융서비스(舊 (주)가이브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2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제209조	과태료 160만원
보험설계사 유진상	케이지에이에셋(주)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유진상은 2014.9.4.~2014.11.6. 기간 중 생명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황태광에게 동부생명보험(주) '(무)연금Plus변액적립보험(1404)' 등 2건(초회보험료 12백만원)의 생명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47.4백만원을 모집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9조, 제209조	과태료 140만원
보험설계사 강국	(주)이엠기업금융 보험대리점의 前소속 보험설계사인 강국은 2013.3.25. 본인이 모집한 동양생명보험(주)의 '골드라이프연금보험'(초회보험료 0.3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2백만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제209조	과태료 20만원

나. 유의사항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부터 제54조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監置) 등의 불이익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관보 공고일로부터 74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보험과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다만, 금융위원회가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의제기를 통보하며,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